대전광역시 중구

구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jjunggu.go.kr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1218호

2021. 6. 3.(목)

차 례

규 칙

○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2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13

○ 대전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 15

안 내 문

▣ 공보의 게재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중구공보 발행일 : 매주 금요일(전자공보) ◎ 공보문건 접수마감 : 매주 목요일

※ **금요일이 휴일일 경우는 목요일에 발행**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다음호에 게재**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특별한 문건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문건은 게재할 수 없으니 각 실·과·소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 고시공고에 등재 후 시행문은 전자결재로 기획공보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는 전자공보로 구 홈페이지(민원·행정-행정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발행 : 대전광역시 중구 / 편집 : 공보담당(우34939)대전시 중구 중앙로 100 ☎ 606-6164, Fax 606-7910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박 용 갑

2021년 6월 3일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 제 1021 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탁의 신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2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상환 요청이 없는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며,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부서의 장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전 상환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신청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약정 등) 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라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관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수령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합계정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6

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상환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 탁 신 청 서

신 청 부 서	
회계・기금명	
예 탁 기 간	
예 탁 금 액	금 원(금 원)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특별회계・기금 부서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신청서

신청부서	(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예탁현황 (단위 : 원)	기 예탁금(가)	기 상환액(나)	예탁잔액(가-나)
상환 신청액	금 원(금 원)		
상환 신청사유			
상환 희망일	년 월 일(입금계좌 :)		

상기와 같이「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특별회계·기금 부서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융 자 신 청 서

신 청 부 서	(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원 (국 , 시 , 구 , 기타)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신 청 금 액	금 원 (금 원)
융 자 금 상 환 계 획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융자신청 부서의 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약정서

0000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자금을 대전광역시 중구 OO회계 또는 OO기금에 융자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를 신청하는 부서(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 간에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조건) ① "융자기관"이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2. 융자목적 : (사업) 자금조달
3. 이 자 율 : 연 %
4.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균등분할 상환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 계산 기간은 융자일부터 기한 종료일까지로 하며, 융자된 날을 산입한다.

③ "융자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 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제1조의 융자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융자기관"은 융자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

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융자기관”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기관”에게 예탁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의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융자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이 약정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기관”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

융자신청 부서의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자금인수 영수증

금 원 (금 원)

위의 금액을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 부서의 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통합계정 융자관리카드

1. 융자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융자일	융 자 조 건		총 계		
		거치/상환	이율(%)	계	원 금	이 자

2. 상환계획

(단위 : 원)

순서	상환연도	상 환 금 액			상 환 잔 액		상 환 실 적	
		계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상환일자	확인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7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 조기상환 □ 연장) 신청서

<table>
<tr><td>신청부서</td><td colspan="3">(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td></tr>
<tr><td rowspan="2">융자현황
(단 위 : 원)</td><td>기 수령액 (가)</td><td>기 상환액 (나)</td><td>상환잔액 (가-나)</td></tr>
<tr><td></td><td></td><td></td></tr>
<tr><td>조기상환 · 연장 신청액</td><td colspan="3">금 원 (금 원)</td></tr>
<tr><td>조기 상환일 / 연장기간</td><td colspan="3">년 월 일에 조기상환 /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로 연장</td></tr>
<tr><td>조기상환 · 연장사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상기와 같이「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의 (□ 조기상환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융자신청 부서의 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3">사업변경계획서 등 관련서류</td></tr>
</table>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박 용 갑

2021년 6월 3일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 제 1022 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중구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의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지정)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시출장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2. 불법주정차 단속, 무단방치차량 단속 업무 담당 공무원
3. 방문보건사업 담당 공무원

제3조(월지급 한도액)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해당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박 용 갑

2021년 6월 3일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 제 1023 호

대전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 관리,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지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 시 일반회계의 경우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은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나 기금을 취급하기 위한 별도의 금고지정 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를 취급하기 위해 지정된 금고가 특별회계와 기금업무도 함께 취급한다.

⑦ 제2항에 따라 복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취급 금고를 제1금고라 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업무 취급 금고를 제2금고라 한다.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어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

3.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 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금고지정이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세무과

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금고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고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안서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금고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와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구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직전 금고은행과 신규 금고은행의 약정기간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2. 구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 마진 수치를 참조)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 운용상황 및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및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약정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대전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Ⅰ. 평가항목 및 배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합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4)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율(안정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9 (6) (6) (5) (2)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의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6 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현금출연만 인정)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순위 간 10% 편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5%로 한다.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1)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 구 금고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2) 평가항목
         가) 국외평가기관(4점)
         나) 국내평가기관(4점)
         다)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

한 자료와 비교·확인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 구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2) 평가항목

가) 총자본비율(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안정성, 6점)

나)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다)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라) 대손충당금적립율(안정성, 2점)

3)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르고,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일시차입금 및 지방채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1) 지역주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 지점의 수, 무인점포 수,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지점의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휴일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1)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을 비교·평가

2)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등은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점)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인재육성사업, 문화·관광·스포츠 진흥, 사회복지 증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현금출연만 인정)(2점)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현금출연만 인정)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